##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-188호

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8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조직은행이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의 위탁기관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(바이오의약 품정책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

현 행	개 정 안	검 토 의 견	
		수정안	검토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

- 전자우편 : goldhans@korea.kr

- 팩 스 : (043) 719 - 3300

대통령령 제 호

#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나목4)가)(1) 중 "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"를 "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, 「약사법」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1. 시설 및 장비 기준	1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	
나. 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장	나	
비 등 세부 기준		
1) ~ 3) (생 략)	1) ~ 3) (현행과 같음)	
4) 진단검사의학실	4)	
가) (생 략)	가) (현행과 같음)	
(1)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	(1)	
검사(NAT, Nucleic a		
cid Amplification Tes		
t): 핵산증폭검사를 실		
시할 수 있는 장비를		
보유한 의료기관, <u>「대</u>		
한적십자사 조직법」	한적십자사 조직법」	
에 따른 대한적십자사	에 따른 대한적십자사,	
또는 식품의약품안전	「약사법」 제90조의2	
처장이 지정・고시하	제1항에 따른 백신안	
는 기관	<u>전기술지원센터</u>	
(2) (생 략)	(2) (현행과 같음)	